

미국의 저작권신탁제도, 관광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기준

정보신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I. 들어가는 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시켜 왔지만, 정상회담 시기 내의 타결은 이루지 못하였다.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상의 협상타결의 의지가 분명한 이상 한미 FTA의 비준은 머지않은 듯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존재하는 국제 경제관련 협정 중 가장 느슨한 형태임에도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수출상품의 관세철폐가 그 주요 목적이었으나 점차 지적재산권, 정보

조달, 경쟁정책 및 무역구제제도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¹⁾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ASEAN 10개국 및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 유럽연합(EU) 및 페루 등과 협상을 마무리하여 각국의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2006년 6월에 협상이 시작되어 그 이듬해인 2007년 6월에 양국의 협상대표의 서명이 있었음에도 소고기 및 자동차를 둘러싼 미국 국내 이해관계가 엇갈려 미 하원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한미 FTA의 발효가 늦어짐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할 것”임을 밝혀,²⁾



1) 외교통상부, 『FTA란 무엇인가』 :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2010년 11월 5일 접속).

2) YTN, 『오바마, 한미 FTA 美자동차업계 이익 확보 시사』 (2010년 11월 8일): http://www.ytn.co.kr/_ln/0104_201011080532504655(2010년 11월 8일 접속).

한미 FTA가 실제 발효되는 것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때 1965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³⁾이자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기존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 비교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전자제품과 같은 공산품의 대미 수출은 분명 한미 FTA의 수혜를 입을 것이며, 미국 자본의 국내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창출 효과도 예측된다. 한미 FTA는 세계 제1의 소비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제거해, 미국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대미 개인 투자의 강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해 취약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금융·교육·서비스업 등이 미국 자본 및 기업에 의해 짧은 시간에 장악될 가능성 또한 높다. 한류 붐을 타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 시장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⁴⁾하고 있는 미국과 동등한 조건 속에 경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것이 한미 FTA를 ‘양날의 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⁵⁾

한미 FTA는 한국의 사회·경제·문화 지형

을 완전히 다시 그리게 할 국제 협정이다. 농업을 비롯한 일부 국내 취약 산업이 타격받기는 하겠지만, ‘양날의 칼’이라는 말처럼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인 개인 사업자가 좁은 한국 시장을 넘어 인구 3억의 시장에 미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세계 최대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한 미국의 법률과 제도의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본 글에서는 세 부분에 관하여 미국의 법제를 간략히 조사해 보았다. 첫째는 저작권 신탁(위탁)관리업체의 범위 및 역할, 둘째는 미국 관광업 등록을 위한 기준, 마지막으로 소규모 스포츠 시설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이다. 짧은 지면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어렵겠지만, 그 개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I. 미국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범위

(1) 미국 저작권 관리 운용 현황

미국은 전통적으로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해 왔다.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저작권의 개념 및 그 권리에 대해서 규정했



3)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Bridging the Pacific, No. XXXIV(January 2004).

4) 임명환,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전망 및 기술혁신 전략」,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 제2호(2009년 4월), 46쪽: http://ettrends.etri.re.kr/PDFData/24-2_043_055.pdf(2010년 11월 4일 접속).

5) 국정브리핑 자료, 『양날의 칼, FTA』(2007년 10월 1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7434>(2010년 11월 5일 접속).

다. 미국 헌법 제1호 제8항은 “저작자나 발명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그들에게 저작물 및 발명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한다”⁶⁾고 명문화하였다. 이후 1790년에 제정되어 이듬해에 발효된 저작권법의 취지를 밝힌 서문에는 본 법이 “지정된 기간 동안 지도, 도표 및 서적의 작성자 및 소유권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⁷⁾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은 연방법 이외에 각주의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⁸⁾ 미국에서 저작권 관련 사안은 오직 연방법(저작권법)으로서 규정된다. 이후 미국 저작권법은 이후 라디오, 텔레비전 및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수차례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미국 저작권법은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으로

나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을 지각이나 복제, 기타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저작물(fixed in any tangible medium)의 원저작물은 본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⁹⁾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한국 법률이 저작 인접권¹⁰⁾을 저작권법의 조항에 포함시키는 반면 미국은 저작 인접권을 고정된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만을 포함한다.¹¹⁾

저작권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역시 대부분의 저작권이 관리업자를 통해 집중관리되고 있다. 저작권 관련 관리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저작물의 이용 범위 등이 넓어지게 되자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저작물의 대량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 6) 저작권 조항(Copyright Clause)으로도 불린다: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 7) Copyright Act of 1790 1 Statutes At Large, 124. 미국 최초 저작권법(1790년 제정)에 관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pyright.gov/history/1790act.pdf>(2010년 11월 5일 접속).
- 8) 상표권은 연방법 및 주법, 그리고 영업 비밀은 각 주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미국저작권 선진시장 정책연구』(2006년 8월), 31~32쪽 참조.
- 9) § 102(a), Circular 92,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한편 (a)항 이하 세부항목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집필저작물, (2) 작사도 포함하는 음악 작품, (3) 음악을 포함한 드라마, (4) 팬터마임과 무용, (5) 미술, 그림 및 조각 작품, (6) 활동사진(motion picture)과 오디오비주얼(audiovisual) 작품, (7) 사운드 녹음, (8) 건축 작품.
- 10) 저작물 창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한 이들을 일컫는다. 한국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 인접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장, No.02-3704-9478(시행: 2008년 2월 29일) 참조.
- 11) 나경원 의원 정책 자료집, 『문화콘텐츠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을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2008년 11월 3일).

디지털·정보통신 기반 환경에서 저작자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 제도이다.¹²⁾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기본 개념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 관리단체(Collecting Societies: 혹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 101)은 이들을 저작물의 공연을 이용 허락하는 협회, 기업에게 공연권 단체(performing rights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편의성 외에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외의 저작권 관리 단체들과의 상호 계약을 체결해 자국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상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둘째, 타국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편리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³⁾

현재 전 세계 40% 이상 문화 콘텐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들이 자체적인 수익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넉넉하며 이와 함께 충분한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다.¹⁴⁾ 그러나 제도적 운용에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과 차이점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저작권 위탁 관리를 별도의 법률 조항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데 비해 미국은 저작권 관리를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¹⁵⁾ 미국 사법부는 이들의 행위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때에만 규제를 한다.¹⁶⁾ 따라서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위탁관리를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토대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국의 집중 저작권 관리단체를 단순히 신탁관리단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미국의 저작권 관리단체의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는, 한국의 경우 각 분야별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1곳만 - 음악저작물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 존재하지만, 미국의 경우 복수의 위탁관리단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음악, 방송의 경우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협회(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와 “미국 방송 음



1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미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연수보고서』 (2008년 1월 23일~2월 1일), 20쪽.

13) 같은 글, 20쪽.

14) 같은 글, 49쪽.

15) 같은 글, 16쪽.

16) 같은 글, 21쪽.

악가 협회(BMI: Broadcast Music, INC)”가 존재한다. 또한 각각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마다 약간씩 상이한 업무 및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비교적 자신의 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인 회원의 개별적인 계약도 보장이 된다. 물론 ASCAP과 BMI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ASCAP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ASCAP과 신탁계약관계가 아닌 업무대행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인 회원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ASCAP에 신탁할 필요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이용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는 자유로운 설립과 영업활동에 비해 그 행위는 비교적 강력히 제한된다. 음악·방송 공연에 대한 위탁관리단체 중의 하나인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협회(ASCAP)”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위반으로 고소되었을 때, 뉴욕 남부 지방법원(US Court –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배타적 권리의 취득 금지”, “이용신청에 대한 허용의무”, “사용료 협의 불성립의 경우 재판의 결정에 따를 의무” 및 “사법부의 감독권한” 등을 판결하여 위탁관리단체의 업무의 행위를 대폭 제한했다.¹⁷⁾ 그러므로 미국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범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각 부분별 대표적인 저작권관리단체의 그 주요 업무를 파악해 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2) 미국의 저작권 관리업체 및 그 업무 범위

본 장에서는 각 분야별 미국의 저작권 관리단체의 특징과 그 업무범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좁은 지면에 모든 저작권 관리업체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 HFA(Harry fox Agency), 그리고 방송권과 공연권을 가진 ASCAP, BMI 및 기타 저작권 관리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복제권과 배포권 관리단체

음악의 경우 복제권과 배포권은 각 음반사와 HFA가 가지고 있다. 이 중 저작권 관리단체인 HFA는 미국음악출판사 협회(NMPA: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에 의해 운영되며, 음원 복제권(혹은 녹음권: Mechanical License) 관리 단체이다. HFA¹⁸⁾는 음악 제작사(Publishers)를 대신해 CD, 레코드, 테이프 및 일정한 디지털 형태의 음악을 포괄하는 음악의 수집, 재



17) 같은 글, 22쪽. United States of America v.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et al.*, Amended Final Judgement, Civil Case No 13- 95, 14 March 1950,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DNY), last modified by an Order of 19 February 1993, 832 F.Supp. 82(SDNY 1993), aff'd 32 F.3d 727(SDNY 1994) 참조.

18) <http://www.harryfox.com/>(2010년 11월 6일 접속).

생산 및 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음원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수금(7.75%)하고 수수료를 제한 후, 이를 각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현재 약 3만 3천 개의 음악 출판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HFA는 기본적으로 미국 외에서 발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감독하지 않는다. 그러나 90개국 이상¹⁹⁾ - 2010년 현재 기준 - 각국의 동종 혹은 유사단체들과의 상호 협력 및 감시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보 제공 및 위반 사례 감시도 한다. 그런데 HFA의 업무 중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음악에 대한 미국 내 음악 복제 및 디지털 사용에 대한 복제권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법(§ 601(b)(7)(A-D))에 의하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 발매된 상품의 경우 미국 내 판매를 위해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각 음반 타이틀에 수록된 모든 저작권자의 승낙과 위임이 있어야만 판매가 허용된다. HFA는 이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디지털 재생산(DPDs: Digital reproductions)에 관한 비 미국적자인 소유권자는 그 작업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든지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디지털 음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HFA로부터 복제권

(mechanical licenses)을 획득해야 한다.

2) 방송권 및 공연권 관리업체

미국의 공연권(실연권: performing rights society)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미국 저작권법(§ 101)은 3단체를 언급하는데,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미국 방송 음악가 협회”(BMI: Broadcast Music, INC) 및 SESAC(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and Composers, INC)이다.²⁰⁾ 관련 저작권자는 위의 ASCAP이나 BMI에 가입하여 전속가입자로 등록되어야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받을 수 있다.

ASCAP²¹⁾는 1914년에 설립된 저작권 관리 단체이다. 방송사들이 이용하는 음원의 저작권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립된 단체로 작곡가, 작사가 및 음악 출판사(Publishers) 등 39만 회원과 400만 이상의 저작물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관리업체이다. 소속 회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이사진(Board of Directors) 24명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 내 유일한 저작권 관리 단체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및 케이블 방송 등의 방송권과 공연권을 주로 담당하



19) HFA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와 상호협력하고 있다.

20) SESAC의 경우 HFA처럼 복제권도 가지고 있다.

21) ASCAP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ascap.com/>(2010년 11월 4일 접속).

며, 그 외에 레스토랑, 항공기 및 디지털 미디어 부분도 담당한다.

ASCAP과 거래를 하는 주 이용자는 미국의 3대 주요 방송(ABC, CBS, NBC)과 지역 케이블 및 상업방송국(FOX,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등으로부터 학교 라디오 방송과 같은 비상업 방송부문에까지 다양하다. 수수료는 방송과 공연의 성격 등에 의해 다소 복잡하게 산정되며,²²⁾ 1년 중 4번은 작가, 4번은 음악 출판사, 4번은 국제계약²³⁾에 대한 저작권료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SCAP과 회원은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독자계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BMI²⁴⁾는 1939년 ASCAP과 동일한 방송권 및 공연권을 갖는 저작권 관리단체로, ASCAP의 독점적 지위에 반발한 라디오 방송사들에 의해 1939년에 설립되었다. 회원은 작사가, 작곡가 및 음악 출판사(Publishers)를 포함하고 주요 업무는 라디오, 공중파 및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수수료를 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BMI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장르 - 블루스, 재즈, R&B, 가스펠, 포크, 컨트리, 라틴음악 및 록앤롤 - 등의 음원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BMI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음악관련 저작권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저작권료 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세계 70개 이상의 저작권 관리기관으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미국 내의 저작권자에게 분배했다.

3) 기타 저작권 관리단체

서적 및 논문의 복사에 관한 저작권 관리업체로서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가 “저작권 청산 센터(CCC: Copyright Clearance Center)”이다.²⁵⁾ CC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복사 및 온라인 저작물 이용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1978년에 매사추세츠주 덴버에 설립되었다. 출판사 및 이용자들 등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며, 주요 담당 분야는 서적, 잡지 및 신문으로부터 약 1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정보와 100만 개 이상의 이미지 파일의 저작권을 아우른다. CCC의 주요 업무는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위한 지원 및 간소화된 저작권 계약 프로세스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포춘지(Fortune)가 지정한 500대 기업 중 400곳 이상의 기업 및 학술기관, 법무법인 및 정부 관련 기관들에게 지



22) 수수료의 비율 및 측정 기준은 이용자 및 장르별로 매우 다양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미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연수보고서』 (2008년 1월 23일~2월 1일), 34~35쪽을 참조.
 23) HTA와 마찬가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와 상호협력하고 있다.
 24) BMI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bmi.com/>(2010년 11월 4일 접속).
 25) Copyright Clearance Center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pyright.com/>(2010년 11월 5일 접속).

작권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해 왔으며, 같은 기간 동안 10억 (US)달러 이상의 저작권료를 원저작권자에게 보상해 왔다. CCC의 운용은 다음과 같다. CCC는 본 센터에 등록된 기업, 기관 등의 복사실적을 확인하여 사용료를 청구하고, 받은 사용료에 수수료를 제한 후 정산하여 출판자에게 분배된다. 출판자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다시 출판자가 그 원저작권자와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CCC는 개입하지 않는다. CCC는 이 부분을 출판자와 원저작권자의 당사자 계약의 문제로 본다.

III. 미국 관광산업 등록기준

(1) 미국의 관광산업 현황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세계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관광여행협회(WTTC: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10년 기준 2억 5천 5백만 명이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9.2%를 차지

하고 있다.²⁶⁾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를 휩쓴 금융 위기로 한때 전 세계 GDP의 10% 이상(2007년)을 차지하던 세계 관광산업의 규모는 다소 위축되었다.²⁷⁾ 한편 미국의 관광산업은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요 산업분야이자 연관 산업 - 이를테면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교통부분 - 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9·11 테러 및 경제 위기는 심각하게 관광산업을 강타하여 16만 명 이상의 관련 종사자가 실직했다. 관광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지방, 주 및 정부 세금만 2004년 기준 994억 달러²⁸⁾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관광산업의 쇠퇴는 금융 위기 후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4백억 달러 이상이었던 2007년 외국인의 대 미국 투자가 2009년에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은 미국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의 하나인 이유이다.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무한한 성공 잠재력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주마다 다른 로컬룰이 적용



26) <http://www.wttc.org/>(2010년 11월 7일 접속).

27) 국제연합 관광기구(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관광산업은 약간의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유럽의 관광산업이 침체되었다. 참조, Global Crisis News 『Global tourism industry collapses: UN World Tourism Agency』(2009년 6월 9일): <http://www.globalcrisis-news.com/travel/global-tourism-industry-collapses-un-world-tourism-agency/id=1037/>(2010년 11월 8일 접속).

28) Economy Watch 『US Tourism Industry』: <http://www.economywatch.com/world-industries/tourism/industry.html> (2010년 11월 8일 접속).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의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관련법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미국의 관광산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미국의 관광산업 등록 요건

1) 여행사(Travel Agency) 설립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여행 상품의 판매와 숙소 및 교통편 등의 일정을 잡아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역할이 다소 축소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행사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시간 절약과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여행사는 소규모 비즈니스 영역에 속한다.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증명서를 관할부서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에 따라 이러한 영업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면허가 필요한 주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서(Master Business Application)를 시(市)나 관할 카운티

의 관공서에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경우, 사업 면허부(Department of Licensing)의 홈페이지에서 업종, 사업장의 위치, 피고용인 및 소유형태(개인 혹은 합작투자)를 기입하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관련 법령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다.²⁹⁾ 워싱턴을 포함한 일부 주는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9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통합사업 식별자번호(Unified Business Identifier(UBI) Number)'로 통상 세금등록번호(Federal Tax Number),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사업자 면허 번호라고도 불리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제공한다.³⁰⁾ 둘째는 '고용보험과 사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Insurance)'이다. 이 두 요건은 관할 관청에 사업등록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시(市) 혹은 카운티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사업행위의 정확한 장소를 증명해야 할 것
- *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축물의 구조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
- * 시(市)나 카운티는 종종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를 규제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최종 서명 전 해당 지역의 로컬 룰(Local Codes)을



29) 워싱턴 주의 여행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https://fortress.wa.gov/dol/mls/wali/guidesheet.asp?intTranId=963504>(2010년 11월 8일 접속).

30)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웹페이지의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Tax Center 섹션 참조: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dex.html>(2010년 11월 9일 접속).

확인할 것

아울러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상호(Business Name)이다. 상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동일 혹은 유사 상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상호 사용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호 결정에 심사숙고해야 한다.³¹⁾

2) 카지노(Gambling Business)

도박 사업은 부정적인 대중인식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산업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등에 도박 관련 법률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주마다 법률 명칭 및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난다.³²⁾ 미국의 카지노 산업은 1931년 네바

다 주에서 처음 합법화된 이래 주변으로 팽창해 갔다. 본래 도박은 카지노를 포함한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카지노를 의미하기도 한다.³³⁾ 미국 연방의회는 “Interstate Wire Act” – 혹은 Federal Wire Act – (Chapter 50, §1081~§1084)³⁴⁾의 도박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각 주들 역시 도박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주들은 도박을 주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³⁵⁾ 본 글에서 모든 주의 도박 관련법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미국 소도시의 카지노를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등록 규정을 살펴보고, 사행산업이 발달한 네바다 주의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한 일반규정(General Regulations)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점이 있으리라 판단되나,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³⁶⁾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카지노 사업을 하



- 31) 워싱턴 주의 상호 검색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dol.wa.gov/business/checkstatus.html>(2010년 11월 8일 접속).
- 32) 한편, 각 주들의 도박 관련 법령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gambling-law-us.com/State-Laws/>(2010년 11월 1일 접속).
- 33) 유진룡,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 넥서스BIZ(2009년), 159쪽; 한편 Interstate Wire Act의 정의에 의하면 사행행위로 갬블링과 게이밍(Gaming)을 같이 언급하지만 저자에 의하면 게이밍은 점차 비즈니스 용어로, 갬블링은 도박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다고도 본다.
- 34) §1081 도박의 정의; §1082 카지노 선(船); §1083 카지노 선과 내륙 사이의 운송 및 처벌; §내기(wagering) 관련 정보의 전달 및 처벌.
- 35) 카지노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1952년, 이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반 갬블링법으로 The Model Act가 제정되어 콜로라도, 인디애나 및 테네시 주 등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다가, 결국 The Model Act는 1984년, 전미 법률 위원회의 결정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되었다(declared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211 E. Ontario St., Suite 1300, Chicago IL 60611, T: 312-915-0195).
- 36) <http://www.arlingtonva.us/departments/CPHD/isd/CPHDIsdcertofoccup.aspx>(2010년 11월 2일 접속).

려면 일단 영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는 설립요건으로 영업 공간(건물)의 소유주(혹은 업체)와 건물사용허가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Permit)를 보유한 경영자가 필요하다. 건물사용허가 증명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건물소유주와 에이전트는 해당 구역 사무소(Zoning Office)에 계획된 건물 사용 개시일자보다 최소 2주 먼저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접수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검 - Inspection Service, 위치(Zoning) 및 공공사업 건강부서(the Health Department and Public Works) 및 소방안전 - 을 받게 된다. 한편 카지노를 위한 공간 내에서 카지노 외의 영업을 포함될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건물사용허가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라스베이거스로 대표되는 네바다 주³⁷⁾에서는 공공 정책으로 도박 산업은 명백하게 네바다 주의 산업 및 주민들의 복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Nevada Revised Statutes(NRS) 463.0129(a)). 따라서 네바다에서는 도박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박업 면허, 판매, 도박장치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박업과 관련된 업주, 지역 등의 모든 요소들의 관리 및 면허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한다(NRS 463.0129(b),(c)). 도박업 면허의 등록 기준은

(NRS 464) 다음과 같다.

- * 네바다 게임 위원회에서는 면허를 발행, 갱신 시, 신청자마다 12월 31일 이전에 500달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12월 31일자로 폐기된다(NRS 464.015(1),(2): Fee for issuance or renewal of license; disposition).
- * 패리 뮤추얼 시스템(pari-mutuel system) 등과 같은 내기 도박은 오로지 네바다 게임 위원회에서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기 도박은 이를 허용하는 다른 주에서 역시 이용 가능하다(NRS 464.020(2): Administration by Nevada Gaming Commission).
- * 네바다 위원회에서는 등록 기준을 두어, 면허 신청자의 지문과 다른 종류의 신원 확인과 함께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면허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불법으로 도박업 또는 도박한 사실여부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NRS 464.020(4) (a)~(d): Administration by Nevada Gaming Commission).



37) 네바다 주의 도박법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ambling-law-us.com/State-Laws/Nevada/> (2010년 11월 2일 접속).

3) 야생 체험 파크(Texas parks and natural life)

미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관광산업의 강점 중의 하나가 넓은 국토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알래스카의 빙하,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Grand Canyon), 콜로라도의 산악, 하와이의 열대 및 화산은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의 눈을 매료시킨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야생 동식물들을 직접 체험하는 관광업이 역시 발달해 왔다. 그러나 야생 체험 관광사업의 전제 조건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공원 및 야생에 관한 법령(Parks and Wildlife Code)³⁸⁾의 규정 및 등록 기준(Chapter 43. Section 022)에 의하면, 야생 체험 관광은 그 목적이 야생 동물 및 놀이 체험에 한해서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그 외에 동물이나 놀이는 금지되어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격 있는 자에게 과학적인 연구, 교육적 디스플레이와 동물 수집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 소유, 운반, 대여 등의 권리를 허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야생 동물 체험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등록 기준 및 허가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제공하는 동시

에 이러한 사업이 공공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몇 가지의 허가 요건이나 수수료(fee requirements)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일단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상호를 선정해야 한다. 상호선정을 위해 텍사스 주에서는 주 정부를 통해 이미 등록된 상호나 법인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텍사스 이외의 다른 주의 상호 역시 상호명부(Trade Names Directory)와 미국 특허청(USPTO)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상호의 사전조사가 끝나면, 상호 최종 결정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개인이나 일반 동업 사업체(Partnership)의 경우에는 가명의 상호(fictitious name)를 사용한다. 텍사스 주의 경우에 개인의 사업체나 무한 책임 동업자로만 구성된 일반 동업 사업체는 사람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의 상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된다. 가명의 상호는 DBA(Doing Business As)를 사용하여 표시하는데, 그 명칭은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 이 상호는 10년간 유효하고 다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비롯한 기타 법인 형태의 사업체는 등기된 법인 이름과 다른 상호를 사용



38) Parks and Wildlife Code: Title 5. Wildlife and Plant Conservation, Subtitle A. Hunting and Fishing License, Chapter 43. Special Licenses and Permits, Subchapter C. Permits for Scientific Research, Zoological Collect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al Display: <http://www.statutes.legis.state.tx.us/Docs/PW/htm/PW.43.htm>(2010년 11월 10일 접속).

하지 않은 한 가명의 상호를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가명의 상호등록은 법인의 경우에는 주 정부 및 법인 소재지와 사업 장소의 카운티에 가명 증서(Assumed Name Certificate)를 등록하는 반면, 개인사업 혹은 동업(Partnership)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소재지 또는 사업 장소의 카운티(Country Clerk's Office)에 가명 증명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한 개인 사업체의 상호는 법인을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개인 사업체의 상호에 주식회사를 표시하는 Inc.나 Corp.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등록 후에는 DBA 증명서를 받게 된다.³⁹⁾

한편 사업 규모와 형태(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부여될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의 종류로는 개인 고용 세금(Self-employment Tax),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고용 신원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판매세(Sales Tax),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 소득세(Income Tax)와 실업 보험세(Unemployment Tax)를 들 수 있다. 국세청에서 각종 세금 및 고용주의 고용 관련 기록(record-keeping requirements)에 대한 정보를 신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⁴⁰⁾

야생체험 관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야생 동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야생 체험의 경우 취득해야 할 허가서 - 야생 체험 사업 계획, 토지와 용수 사용, 공중 야생 체험 매니지먼트 허가 등 - 도 많으며, 관련 면허 역시 발급받아야 한다. 면허 발급기관으로서 정부가 아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⁴¹⁾

IV. 미국의 소규모 체육시설 기준

(1) 미국의 스포츠 현황

운동이 생활 속에서 갖는 이로운 기능은 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많은 사람들도 운동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역시 운동(스포츠)이 청소년 범죄와 폭력을 예방하고, 이민자의 문화적 통합, 여성의 권익 신장, 성인 및 아동 비만을 감소, 극빈 탈출과 기아를 추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 및 민간 사회체육 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다른 구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공공 및 민간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시



39) Making Nature Your Business: Texas Parks and Wildlife, p. 25: http://www.tpwd.state.tx.us/publications/pwdpubs/media/pwd_bk_w7000_0761.pdf(2010년 11월 3일 접속).

40) 같은 글, 24쪽.

41) 허가받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tpwd.state.tx.us/regulations/>(2010년 11월 4일 접속).

켜 왔다. 원래 미국의 체육활동은 국방체력의 일환으로 장려되었으나, 2차 대전 이후인 1955년, Kraus Weber의 연구를 통해 미국 청소년들이 유럽 청소년들에 비해 체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되자 체력향상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이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스포츠가 건강 증진, 자유 시민의식의 함양 및 사회의 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이러한 사회적 배경 외에도 미국은 세계의 비만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민간의 관심 역시 높다. 일례로 1992년부터 10년 동안 미국의 피트니스 센터(헬스클럽)는 약 40퍼센트 성장했으며, 회원도 3천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되었다.⁴³⁾ 즉 미국인의 10명 중 1명은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인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그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증가해 왔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러닝머신이나 고정식 자전거와 같은 운동기구에 의해 부상을 입고 부상자의 약 20%가 골절상이었다고 보고되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내 스포츠사업은 미래가 유망한 사업 아이템 중의 하나임에는 분

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소규모 체육시설의 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최근 그 기준이 엄격해진 수영장(스파 포함)과 실내 스포츠 시설(Indoor Playground) 및 도장(Martial Art School) 등의 시설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미국의 소규모 체육시설 기준

1) 수영장과 스파(Spa) 시설

수영장과 스파는 야외 및 실내에 설치되어 수영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따뜻한 튜브(Tube) 혹은 고정된 물 놀이터(Non-portable wading pools)를 의미한다.⁴⁵⁾ 수영장 및 스파 시설 관련 연방법은 “버지니아 그림 베이커 수영장 및 스파 안전 법(The 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 15 USC 8001)”이라고도 불린다. 전 미 상원 의원이었던 제임스 베이커 3세의 손녀 그림 베이커가 2002년 6월 스파의 배수구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ASME/ANSI A112.19.8 - 2007)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었다. 각 주



42) 하니, 『생활체육의 관리운영 시스템 탐색』, 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논문(2009년 6월), 14~15쪽.

43) MoneyWatch.com, 『Industry will continue to prosper - Trends - health club industry』 (2002년 5월/6월):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m0675/is_3_20/ai_86230655/(2010년 11월 12일 접속).

44) 전력경제, 『헬스기구 안전검사기준 제정 시급』 (2007년 2월 3일): <http://www.epe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9>(2010년 11월 13일 접속).

45) Sec. 1403(6). Definition.

의 법령도 이 연방법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연방법(Section 1404)에 의하면 수영장이나 스파의 소유자(Owners)나 관리자(Operators)는 배수구의 커버를 안전기준(ASME/ANSI A112.19.8)에 부합하도록 2008년 12월 19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공공 수영장 및 스파일 경우에도 위의 안전시설에 부합되도록 개량해야 한다. 배수구가 하나인 모든 공공수영장과 스파 역시 언제라도 배수가 되어야 하는(unblockable) 시스템과⁴⁶⁾ 하나 이상의 배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배수구 커버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거한 안전 규정에 준수된 제품이어야 하며, 새로운 안전 기준(ASME/ANSI A112.19.8)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Section 1404(b)). 이 밖에 연방법(Section 1406)은 최소한 안전시설 기준(Safety Standards)으로서 (1) 안전한 폴장 커버 설치, (2) 폴장 게이트에 자기 개방(self-opening), 유지(self-latching) 장비 설치, (3) 폴장 개문(開門) 시 경보 장치 및 사운드 설치, (4) 수영장에 들어갈 시 알람 장치 설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2) 실내(Indoor Playground) 설치 기준(최소 기준 요건)

미국의 경우 연령대별로 체육 시설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나뉘어져 있어, 신체 발육 상태에 따른 적절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취학 전(만 6세 이하) 어린이의 체육시설 기준⁴⁷⁾은 다음과 같다. 그네(6개 세트)는 앉는 부분의 재료로 고무, 철 및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고무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네 지지대의 높이는 7~8피트, 그네의 넓이는 3~3.5피트여야 한다. 놀이터의 모래상자(Sand Box)의 경우, 상자의 외면은 아연으로 처리되며 모래는 8~10인치의 깊이로 하며 종이, 나무막대기, 풀, 병과 같은 물건은 모래상자에서 사용금지시킨다. 소형 미끄럼틀의 경우 미끄럼틀 낙하 시작점-계단-지면의 각이 60도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각 계단의 층계가 가까워야 한다. 양쪽 손잡이에 레일이 설치되어야 하며, 계단의 넓이는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46) (I) 반 엔트랩먼트 시스템(Anti-Entrapment System) -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배수구 덮개 장치를 설치 및 안전 진공 방출 시스템(Safety Vacuum Release System)
 (II) 흡입 제한 구멍 시스템(Suction - Limiting Vent System)
 (III) 중력 배수 시스템(Gravity Drainage System)
 (V) 자동 펌프 단힘 시스템(Automatic Pump shut-Off System)
 (VI) 배수 장애 장치 시스템(Drain Disablement). 이 외에도 수영장 배수 시스템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위원회(Commission)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47)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Office of Education, 『Planning Your Playground』, pp. 16~18쪽.

확보한다. 미끄럼틀 슬라이드대는 적어도 8인치의 넓이로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자유자재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잡이는 계단부터 평형단까지 아이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만 6~12세 이상)⁴⁸⁾인 경우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네(6개 세트)의 높이는 10~12피트로, 앉는 부분의 넓이는 4.5~5피트로 한다. 미끄럼틀의 경우 8피트의 높이와 16피트의 길이를 갖추도록 한다. 수평 사다리의 경우 6.5~7.5의 높이, 16피트의 길이(주니어 사다리의 경우에는 12피트)이며, 활용 중 구부러질 위험을 막기 위해 타원형의 파이프를 권고한다. 철봉(Bar)은 아연 도금 금속 강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3/4에서 11/8인치의 지름, 두 개의 수직으로 세운 파이프는 2~3인치로 세트별로 5~6피트씩 이격시켜 설치되어야 한다. 철봉의 아래 지면은 추락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드럽고 청결해야 한다. 시소는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2인치를 넘어설 수 없으며, 보드의 길이는 10~12피트로, 전나무 혹은 노스캐롤라이나 소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앉는 좌석은 2인치 두께와 10~12인치의 넓이로 적절한 손잡이를 갖추어야 하며, 좌석 아래에는 안전한 범

퍼를 설치해 지면에서 6~9인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한 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체육관 내 한 쌍의 농구대 및 배구 포스트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주변에 의자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중고생의 체육활동은 성인에 준하는 다양한 스포츠를 영위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주로 야구, 라크로스, 소프트 볼 및 축구와 같은 옥외 스포츠와 농구, 배구 및 핸드볼 등의 실내 스포츠로 나눌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 스포츠 시설 규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시설 기준을 그 스포츠 활동 범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부 학교 시설 계획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권고하고 있다.⁴⁹⁾ 특히 주요 실내 스포츠인 농구와 배구의 경우 중학 및 고등학생으로 나누고 있다(표1 참조). 한편 대학의 경우에는 3가지 시설 기준을 갖고 있는데, '국제 경기 수준'을 치를 수 있는 시설, '지역 경기'를 위한 시설 및 '근린 수준'의 시설 등으로 나뉘고 있는데, 코트의 크기는 경기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다만 안전거리와 천정 높이에 대해서만 차이를 두었다.⁵⁰⁾ 눈에 띄는 것은 각 연령별로



48) 같은 글, 18~21쪽

49) 김효일, 「학교 스포츠홀의 적정규모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 일본, 영국, 독일, 미국 체육시설 규정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시설학회지』 제7권 제3호, 통권 23호(2000년 9월). 28~29쪽.

50) 같은 글, 29쪽.

〈표 1〉 미국 초·중·고등학교 시설기준

(단위: m²)

구 분	고교(남녀) 9~12학년		중학(남녀) 7~9학년		초등(남녀) 1~6학년		협회규정		
	길이	폭	길이	폭	길이	폭	길이	폭	
배구	코트의 크기	18,29 x 9,14		18,29 x 9,14		15,24 x 7,62		18,29 x 9,14	
	안전거리	3,65	3,05	1,82	1,82	1,52	2	1,8	1,8 이상
	경기장 크기	25,6 x 15,24		22x12,8		18,3x11,6			
	경기장 면적	390,1		281,6		212,3			
	천정높이	6,7~7m		6,7m		6,1m		6,1m 이상	
농구	코트의 크기	25,6 x 15,24		22,56 x 12,8		18,29 x 11,58		(28,6~22,6)x (15,2~12,8)	
	안전거리	2,43	1,21	2,43	1,21	2,43	1,21	(0,9~3) 이상	
	경기장 크기	30,4 x 17,7		27,4 x 15,24		23,15 x 14			
	경기장 면적	538		417,6		269,3			
	천정높이	6,7~7m		6,7m		6,1m		6,1~7,32m 이상	

자료 :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학교시설 교육과: 김효일(2000)의 글에서 인용.⁵¹⁾

시설 사이에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도장(Martial Art School)

태권도, 유도, 쿵푸(때에 따라 요가까지 포함 시키기도 함) 등을 수련하는 도장은 자기방어 및 심신단련 등을 위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 조사에 의하면 약 15%의 미국인이 평생에 1회 이상 도장의 회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약 3~5%의 미국인이 - 2000년 기준으로 약 6

백만 명 - 현재 각 도장에서 무예를 연마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⁵²⁾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⁵³⁾

보통 체인이나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비교적 덜 설치된다. 뉴햄프셔 주의 도장 운영에 관한 법령(Title XXXI, Trade and Commerce, Chapter 358-s, Martial Arts Schools, Section 358-S:1)의 도장 시설 관련 조항은 도장의 비즈니스 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Equipment), 물리



51) 같은 글, 29쪽.

52) Bplans.com, 『Martial Arts School Business Plan』 : http://www.bplans.com/martial_arts_school_business_plan/strategy_and_implementation_summary_fc.cfm(2010년 11월 13일 접속).

53) 다만 주에 따라 사범(Instructors)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위스콘신 주의 경우에는 Wisconsin Assembly Act 47을 통과시켜 모든 도장의 사범들은 주의 Department of Regulation and Licensing(DRC)에서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결정했다. 사범들은 면허심사 때 미국 내 타주에서라도 폭력, 아동폭력 및 약물복용 관련 전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추세는 점차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적 구조(physical structure) 및 고정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⁴⁾ 다만 도장의 운영자는 도장 사업을 등록 및 갱신하고자 할 때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시설관련의 조항이 일부 존재한다. 도장의 사이즈 및 관련 구비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서비스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샤워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수에 대해서 밝혀야 할 정도이다.

V. 나가는 글

이상과 같이 미국의 세 분야 - 저작권 신탁제도, 관광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기준 -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의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과 달리 저작 인접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고 고정된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한국과 다소 차이점을 보이는데, 미국은 동일 업종에 대한 저작권 기관의 복수 설립이 허용되어 저작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며, 계약 종료 후 타 기관과의 계약 역시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자는 경우에 따라 가입된 저작권 관리단체와 별도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을 신탁단체 혹은 신탁기관이라 일컫기 어렵다.

관광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이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의 관광산업 역시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9·11 테러, 강화된 출입국법 및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경기침체는 미국의 관광산업의 앞날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광활한 자연과 관광 인프라가 존재하는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국가임에는 분명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카지노 사업과 자연 관광은 미국이 타국과 비교해 우월한 지리적·법률적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엄격한 법령의 정비를 통해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통해 창출되는 부를 주민 및 시에 재투자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자연 환경의 보존에 가장 큰 중점을 두지만, 관광객에게 야생 환경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⁵⁵⁾

마지막으로 미국은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 안



54) 뉴햄프셔 주 도장운영에 관한 법령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gencourt.state.nh.us/rsa/html/XXXI/358-S/358-S-mrg.htm>(2010년 11월 13일 접속).

55) 한편 미국은 관광산업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의 웹페이지가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http://www.buyusa.gov/europe/travel_tourism_research.html(2010년 11월 8일 접속).

맞춤형 법제정보

전문제를 가장 우위에 두고 있다. 각 연령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스포츠 시설의 경우 그 재료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도장(Martial Arts School)과 관련한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무예(무술)를 위험한 행위(High Risky Activity)라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위스콘신 주처럼 무예(무술)를 가르치는 사범은 미국 법무부의 기록조회를 통해 폭력 및 약물전과가 없어야 하며,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미 FTA의 체결은 분명 한미의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법률 제도가 상이한 점이 많고, 법령 체계 역시 연방법, 주법, 로컬룰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조 의 행

(영국주재 외국법제조사원)